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11927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오세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령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D은 E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던 자, C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4. 23. C과 사이에, 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3,500만 원에 매수하고, 만일 C이 2018. 4. 30.까지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에게 완료시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동산을 납품받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D이 채무자로서 “원고로부터 2016. 11. 17.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17.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C의 무자력 여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종합하면, 사실조회회신 당시인 2020. 7. 2. 기준으로 C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점,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당시인 2021. 8. 23. 기준으로 C의 F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가 34,116원(= 466원 + 25,588원 + 8,062원), 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83,909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8. 4. 23.을 기준으로 C의 무자력 상태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피고의 선의 여부

설령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2,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500만 원을 2018. 2. 7.

1,000만 원, 2018. 2. 22. 500만 원, 2018. 3. 30. 1,000만 원, 2018. 4. 23. 1,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8. 2. 7. 980만 원, 2018. 2. 22. 490만 원, 2018. 3. 30. 1,000만 원, 2018. 4. 23. 1,000만 원 합계 3,47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②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로써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동시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피고와 C은 대금지급과 물품공급을 동시이행관계로 정하지 아니한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물품공급 지연시 C이 피고에게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8. 7. 1.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을 대표, 아들 I를 과장으로 하는 명함을 만들어 가구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는 J를 운영하는 K과의 사이에서 K으로부터 식탁, 스톨 등 가구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에게 2018. 5. 3.부터 2018. 7. 10.까지 K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가 가구 판매 사업을 실제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는 C으로부터 가구를 인수받아 새로이 가구 판매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C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친분관계나 그 이전부터 사업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

별지

## 목 록

원목탁자(접이식) 20개, 원목차탁 50개, 원목좌탁 소 40개, 중 40개, 대 40개, 원목  
식탁 소 20개, 스톤 40개, 원목식탁 중 5개, 스톤 10개, 벤치 5개, 원목관제(완제품)  
소 20개, 중 20개, 대 20개, 원목침대 1조, 원목드레스 1단 5개, 중통 3개, 2단 5개  
외 부속품, 글.

